

## 2025년 마케팅 지원사업 모집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용인시 소재 기업의 인지도 향상 및 제품 유통시장 진입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마케팅 지원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2월 14일  
용인시산업진흥원장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관내 기업의 다양한 마케팅 활동 지원을 통한 기업 인지도 향상 및 제품 유통시장 진입 촉진
- 사업기간:** 2025. 2. ~ 2025. 10.
- 사업내용:**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규모:** 28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총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분야 중복 신청 가능(홍보물 제작 + 홍보영상 제작)

지원분야	지원내용
온·오프라인 광고	○ 온라인: 모바일, 배너, 키워드, SNS 등 ○ 오프라인: 지면, 버스/지하철 광고, 신문(보도기사), 잡지, 옥외광고 등
홍보물 제작	○ 지물로 인쇄되는 홍보물 - 카탈로그, 브로슈어, 전단지, 리플렛 등
홍보영상 제작	○ 동영상(기업 및 제품 홍보 동영상)
홍보용 웹페이지 제작	○ 상시 전시되는 디지털 웹기반 홍보물 제작 - PC,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등 * 단, 호스팅·도메인 등 유지보수(제작 외 비용)만을 위한 비용은 지원 불가

-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500만원 지원(공급가액 기준)
  - 부가가치세 및 송금수수료 등 지원 제외
  - 지원기업은 총 소요비용의 20% 이상 현금 매칭 필수
    - 총사업비 매칭 비율 (지원금 : 매칭금 = 8 : 2)
    - \* 예시) 총 소요비용이 500만원일 경우, 지원금은 400만원 신청, 기업부담금은 100만원 매칭 필요

## 2

## 신청자격

- 지원대상: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b>* 공장 증빙</b>
1) (용인 소재 본사가 없을 시) 공장등록증명서 제출 2) 용인시 지방세 납입증명서(유효기간 내)
<b>** 중소기업 범위 (별첨1 참고)</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기업

- 제외대상

구 분	내 용
참여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참여 제한 중인 사업자(법인/개인)</li> </ul>
세금 체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li> </ul>
부도/휴·폐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경우</li> </ul>
서류 허위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li> </ul>
부적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관련 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li> <li>○ 타인의 저작권 침해, 창작물을 도용·모방한 기업</li> </ul>
중복수혜 및 신청가능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 신청내용으로 유사사업을 중복수혜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li> <li>○ 진흥원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신청기업 지원현황 확인 절차를 통하여 중복수혜 여부 파악 예정,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별첨2) 참고</li> <li>○ 동일연도 진흥원 지원사업은 최대 5개까지 신청 가능 단, 예외사항 및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별첨3) 참고</li> </ul>

### 3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5. 2. 14.(금) ~ 2. 27.(목) 17:00

※ 접속이 물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신청하지 못할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https://ybs.ypa.or.kr/portal.do>)

○ 용인기업지원시스템 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접수처 외 메일, 오프라인 등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는 모두 PDF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 미비서류 발생 시 기업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을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문의처: 기업육성팀 (☎ 031-323-4675, [dykim@ypa.or.kr](mailto:dykim@ypa.or.kr))

### 4

## 지원금 지급 및 선정방법

□ 지원금 지급

○ (지급시기) 사업 완료 후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내역(증빙서류) 제출, 해당 서류 검토 및 완료평가 후 사업 '적정' 판정 시 지원금 지급(후지급)

※ 사업 포기 또는 완료평가 후 사업 '실패' 판정 시 지원금 전액 지급 불가

○ (지 급 처) 선정기업에 직접 지급

○ (지급조건)

- 결과물 제작 외 소요되는 비용은 지급 불가(부가가치세, 송금수수료 등)

- 협약기간 내 결과물 완성 및 비용 집행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지급

※ 결과물 제작과 관련된 비용 집행 건(세금계산서 발행, 대금 지급(이체, 결제) 등) 증빙 필수

□ 선정방법

○ 외부 평가위원 5인의 선정평가(서면)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7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미선정 기업 중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은 고득점순으로 예비기업 선정

※ 기업 선정 후 결격사유 등 여러 사유에 의한 탈락(포기)기업 발생 시 예비기업을 추가 선정할 수 있음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영세기업(직전년도 매출액 등) 우선

○ 선정평가를 통해 기업이 신청한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평가기준표

○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지원의 필요성	- 추진 목적 및 배경, 추진 필요성 등	20점
기업(제품) 역량	- 기술성 및 제품 우수성 - 사업수행능력 -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지원능력 등	2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 사업계획의 구현 가능성 - 사업비 집행계획 적정성, 활용계획의 타당성	40점
기대효과	- 예상 성과(매출, 고용, 인지도 등) - 파급효과(산업적, 경제적 효과 기여)	20점
<b>총 계</b>		<b>100점</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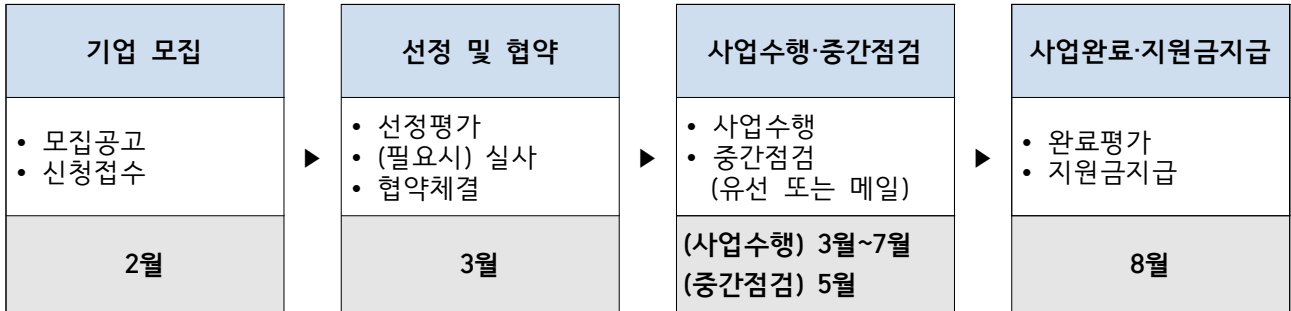
○ 가감점

구 분		점수	비 고
가점	진흥원 입주기업	+1점	
	여성기업	+1점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확인서
	용인시 우수기업 또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1점	용인시 인증서 ※ 중복 적용하지 않음
감점	지원금액 총계 (전년도)	5천만원 이상	-4점
		3천만원 이상	-3점
		3천만원 미만~2천만원	-2점
		2천만원 미만~1천만원	-1점
	매출액 (전년도)	300억원 이상	-4점
		300억원 미만~200억원	-3점
		200억원 미만~100억원	-2점
		100억원 미만~50억원	-1점

※ 가·감점은 선정평가(서면, 발표)시 1회에 한해 적용함

## 5

## 추진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6

## 지원사업 유의사항

### □ 사업신청 및 선정

- 선정평가를 통해 기업이 신청한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 진흥원 내부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신청기업 중복수혜 여부 판단(별첨 참고)
  - ※ 상기 외에도 지원금 부정청구 또는 부정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당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선정 후 필요시 실사를 통해 제출서류 내용을 대조하여 사업장 소재지 등을 검증할 예정이며,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 사업 수행 중 혹은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원자격 미충족으로 밝혀질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협약기간 동안 모집공고 내 명시된 지원자격 조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 협약기간 내 관외 지역으로 이전, 중복수혜 해당 등의 경우 지원 취소
- 서류 보완 요청 시, 일정 기한 내 보완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됨
- 마감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평가에서 제외됨
- 신청기업은 대행업체 선정 후 본 사업에 신청하여야 함  
(단, 필요시 자체 수행 가능(SNS, 키워드 등 온라인 광고만 해당))
  - ※ 대행업체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거나, 사업과 무관한 업체인 경우 평가 대상 제외

## □ 지원금 집행

- 사업비(지원금 + 기업부담금)에 부가가치세와 송금수수료 등 결과물 제작 외 소요되는 비용은 지원 불가함
- 사업비는 반드시 협약기간 내 집행해야 하며, 협약기간 이전 혹은 이후 집행 건은 모두 불인정됨
- 사업 완료 후 비용 집행 건에 대해 세금계산서, 송금확인증 등 증빙 필수

## □ 사업수행

- 사업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완료·정산보고서 등 기타 관련 자료 제출에 불응할 경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해당 집행 건이 불인정될 수 있음  
ex) A제품에 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사전승인 없이 B제품에 대한 홍보영상을 제작한 경우 등
- 결과물 및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보고한 경우 진흥원 내부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참여제한 등)를 받을 수 있음

※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담당자 이메일, 구두 공지사항 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7

## 제출서류

※ 모든서류는 PDF파일로 제출하며 파일명 구분 필수

※ 제출서류의 누락이 있는 경우 신청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구분	연번	구비서류	부수	비고	발급처
필수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 대표자 서명 후 제출	진흥원 양식
	2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서	1부	- 대표자 및 담당자 서명 후 제출 ※ 신청서 내 개인정보를 기입한 모든 인원 서명	
	3	확약서	1부	- 대표자 서명 후 제출	
	4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1부	- 본점 소재지 확인 가능한 사업자등록증 제출 - 모집공고일 기준 <b>1개월 이내</b> 발급분 * 용인에 공장만 있는 경우 <b>공장등록증명서 추가 제출</b>	관할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5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 업태/종목 확인 가능한 사업자등록증 제출 ※ 온라인 광고 자체 수행 시 미제출	대행업체
	6	견적서 (세부산출 포함)	1부	- 견적서 내 날인 필수 ※ 온라인 광고 자체 수행 시 사업비 산정 증빙으로 대체 (비용 안내 페이지 캡처화면, 영수증 등)	
	7	20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 국세청 확인본으로 제출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 개인사업자 및 24년 재무제표 발급 전일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 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증명원 제출	관할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8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 모집공고일 기준 유효한 서류 제출 ※ 개인사업자의 경우, 발급처(용인) 확인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해당시	9	가점서류	각 1부	- 여성기업, 우수기업, 입주확인서 등 - 모집공고일 기준 유효한 서류 제출	-

- 별첨
1.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2. 중복 범위 (유사사례 중심)
  3. 진흥원 2025년 지원사업 목록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4. 8. 28.] [법률 제20362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2020. 12. 8., 2020. 12. 2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20.>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별첨2**

**중복 범위 (유사사례 중심)**

사업구분	사례유형	세부내용	중복여부
인증/ 특허출원	동일제품/동일인증	[A제품] KC인증 → 경기도 지원 → 진흥원 지원	중복 O
	동일제품/동일특허출원	[A제품] 국내특허 → 경기도 지원 → 진흥원 지원	중복 O
	동일제품/상이인증	[A제품] KC인증 → 경기도 지원 GS인증 → 진흥원 지원	중복 X
	동일제품/상이특허출원	[A제품] 국내특허 → 경기도 지원 해외특허 → 진흥원 지원	중복 X
	상이제품/동일인증	[A제품] ISO인증 → 용인시 지원 [B제품] ISO인증 → 진흥원 지원	중복 X
	상이제품/동일특허출원	[A제품] 국내특허 → 용인시 지원 [B제품] 국내특허 → 진흥원 지원	중복 X
시제품	동일제품/동일제작분야	[A제품] 목업 → 경기도 지원 → 진흥원 지원	중복 O
	동일제품/상이제작분야	[A제품] 금형 → 경기도 지원 PCB제조 → 진흥원 지원	중복 X
	상이제품/동일제작분야	[A제품] 금형 → 경기도 지원 [B제품] 금형 → 진흥원 지원	중복 X
마케팅	동일제품/동일제작분야	[A제품] 홍보 동영상 제작 → 경기도 지원 → 진흥원 지원	중복 O
	동일제품/상이제작분야	[A제품] 카탈로그 제작 → 경기도 지원 리플렛 제작 → 진흥원 지원	중복 X
	상이제품/동일제작분야	[A제품] SNS광고 → 용인시 지원 [B제품] SNS광고 → 진흥원 지원	중복 X
해외물류비 지원*	동일수출신고번호	[수출신고번호 A] → 경기도 지원 → 진흥원 지원	중복 O
	상이수출신고번호	[수출신고번호 A] → 경기도 지원 [수출신고번호 B] → 진흥원 지원	중복 X
지역현안	동일아이템/동일지원내용	[A아이템] 시제품 제작-용역비 → 창진원 지원 → 진흥원 지원	중복 O
	동일아이템/상이지원내용	[A아이템] 플랫폼 제작-인건비, 광고비 등 → 창진원 지원 시제품 제작-용역비 → 진흥원 지원	중복 X
	상리아이템/동일지원내용	[A아이템] 플랫폼 제작-광고비 → 창진원 지원 [B아이템] 플랫폼 제작-광고비 → 진흥원 지원	중복 X

\* 수출건수(수출신고번호) 기준으로 중복여부 판단

※ 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중복 기준 적용

※ 중복지원 기준은 외부기관 뿐만 아니라 진흥원 내부사업 간에도 적용

**별첨3**

**진흥원 2025년 지원사업 목록**

NO	지원분야	사업명	담당부서	
1	기술지원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R&D)	미래산업팀	
2		대기업-중소기업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3	마케팅·판로지원	맞춤형 온라인 판로지원	기업육성팀	
4		용인 기업 기획전 입점 지원		
5		TV 홈쇼핑 입점 지원		
6		공공판로 입점 컨설팅		
7		공공조달 등록 지원		
8		마케팅 지원		
9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온/오프 마케팅 지원		소공인육성팀
10		용인시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		
11	해외진출 종합지원(해외지사화 지원)	수출지원팀		
12	맞춤형 해외시장 개척 지원(해외TV홈쇼핑 입점지원)			
13	맞춤형 해외시장 개척 지원(수출 대행 서비스 지원)			
14	사업화 지원	첨단기술 융복합 실증지원	미래산업팀	
15		인증·특허 지원	기업육성팀	
16		ESG 경영 및 탄소중립 인증 지원		
17		시제품 제작 지원		
18		인공지능 활용 제품개발 지원	소공인육성팀	
19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운영(시제품 제작지원)		
20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운영(인증 지원)		
21		ICT 디바이스 용인랩 운영(시제품 제작지원)		
22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시제품제작 지원		
23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산업재산권 및 인증 지원	수출지원팀	
24		해외진출 종합지원(해외물류비 지원)		
25		창업지원	창업지원센터 통합운영(사업화/마케팅 지원)	창업지원팀
26	맞춤형 창업지원(사업화/마케팅 지원)			
27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선택형사업)			

- 위 사업 목록 중 최대 **5개** 사업까지 지원가능(당해년도 기준)
  - ※ 해당 사업목록은 신규사업 신설 및 기존사업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천만 원 이상**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2천만 원 이상** 사업에 추가 지원 불가(**빨간색표기**)
  - ex) A사업 선정(지원금 2천만원) → B사업(지원금 3천만원) 신청 불가, C사업(지원금 5백만원) 신청 가능
- 당해연도 기준 동일사업에 **2회 이상** 수혜 불가
  - ex) 상반기 A사업 선정 → 하반기 A사업 신청 불가